

[별첨 1]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1조(상호) 당 회사는 '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'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CoAsia Optics Corp. 라 표기한다.</p>	<p>제1조(상호) 당 회사는 '주식회사 <u>코아시아씨엠</u>'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<u>CoAsia CM Co.,Ltd</u> 라 표기한다.</p>	<p>사명 변경</p>
<p>제 2 조(목적)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중략)</p> <p>18.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</p> <p>(추가)</p>	<p>제 2 조(목적)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중략)</p> <p><u>18. 확장현실(XR), 가상현실(VR), 증강현실(AR) 전용기기 장치물 부품 제조업</u></p> <p>-</p> <p><u>19.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</u></p>	<p>사업다각화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</p>
<p>제 4 조(광고방법)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coasiaoptics.com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.</p>	<p>제 4 조(광고방법)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coasiacm.com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.</p>	<p>사명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 변경</p>
<p>[부 칙] (신설)</p>	<p>[부칙] <u>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개정</p>